

“노후 준비 핵심은 ‘현금흐름’... ‘우물 자산’ 구조 만들어야”

월급형 수익구조 전환 로드맵

김 동 업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본부장

공적연금·주택연금·퇴직급여로 ‘돈길’ 설계
부부 ‘연금 맞벌이’ 1순위... 각자 연금확보
주택연금 사실상 대출, 복리구조, 개시 신중
퇴직금은 IRP·연금저축으로 옮겨 연금 수령
배우자 유고 대비, 유족연금 선택·종신보험 점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산 관리 방법은 곳간 형태의 자산이 아니고 우물 형태의 자산을 만들어 놔야 돼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한테 발생할 수 있게 월급 처럼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김동업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본부장은 지난해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주최한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1’에서 노후 자산 유동화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은퇴자들은 공적연금, 주택연금, 퇴직급여 등을 활용해 현금 흐름이 효과적으로 창출되는 우물 형태의 자산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금 맞벌이 구조 확립해야”

김 본부장은 배우자가 있다면 연금 맞벌이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재정을 합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자산을 따로 관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다. 연금 맞벌이는 맞벌이부부가 연금을 각자 운용해 따로 받는 것을 뜻한다.

실제 김 본부장은 “40대, 50대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의 한 60%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맞벌이하면 부부가 재정을 합쳐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저축한 뒤, 집 사고 같이 자산 관리했는데 요즘 맞벌이의 특징은 부부가 돈을 합치지 않는다”며 최근 부부들의 자산 운용 추세를 짚었다.

그러면서 “월급도 각자 쓰던 사람이 은퇴하면 연금을 합칠 확률은 높지 않다”며 “연금과 배우자 연금이 각각 준비하는 것들은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각각의 삶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 연금, 배우자 연금을 합쳐서 부부가 연금 맞벌이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산규모가 가장 큰 ‘집’ 활용

김 본부장은 은퇴자들의 우물 형태 자산 구조 설계를 위해 주택연금 활용법도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조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가 넘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12억원 이내여야 한다.

다만, 주택연금 활용에도 주의할 점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은퇴 후 자산 관리를 ‘곳간’이 아닌 ‘우물’처럼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로 표현한 이미지.

이 있다. 김 본부장은 “주택연금은 연금이라 쓰고, 읽을 때 대출이라 읽는다”라며 주택연금의 복리 구조를 짚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인 만큼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한다. 해당 이자는 매월 납부하지 않고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누적되며, 이후 원금과 함께 정산된다.

투자에 복리가 붙으면 자산이 불어나지만, 대출에 복리가 붙으면 빚이 빠르게 늘어난다. 이를 고려해 김 본부장은 주택연금 개시 시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본부장은 “만일 금융자산도 있고 집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자산을 운용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이 대출 이자보다 많다면 주택연금을 바로 개시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시 시기를 조금 늦추고 금융자산부터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의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주택 시장 가격의 전망 등을 고려해 개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퇴직급여로 배우는 소득 공백

우물 형태의 자산 구조를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은 퇴직급여다. 퇴직급여는 퇴직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소득 공백 시기에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다.

특히, 김 본부장은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받는데, 이때 퇴직자는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김 본부장은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해 놓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해 준다”면서 “세금도 감면받고,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니까 이 소득 공백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 다 써버리거나 연금저축으로 부여놓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소개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장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기본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 배우자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종신보험

배우자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유족연금의 수급 1순위는 배우자이며, 유족연금 금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년 동안 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연금의 수령액을 비교해, 사망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단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포기한다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본인 연금에 더해준다.

종신보험도 제시됐다. 김 본부장은 종신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본부장은 “보험이라는 게 작으면 몇 천 만원에서 크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그것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경미 사고는 ‘사진 먼저, 차는 바로 이동’... 2차 사고 막는 대처법

도로 위 손해 줄이는 3원칙

이 응 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상팀 팀장

고장 시 보험사 24시간 긴급출동 확인
특약 없으면 고속도로 무상견인 활용
다툼엔 과실비율정보포털 기준 체크
위험하면 촬영보다 안전이동 등 우선
부상 땀 119... 현장 이탈엔 뺑소니 주의



개인용 승용차 2000만 대 시대, 자동차보험은 단순 가입 의무를 넘어 운전자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생활 필수품이 됐다. 다만, 보험은 가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고가 났을 때, 차가 멈췄을 때, 과실 비율로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알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꼭 알아둘 핵심을 정리해 본다.

◆ 차 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먼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흔한 오해가 있다. “사고 현장에서 차를 먼저 빼면 과실 비율에서 불리하다”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 출동을 기다리며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교통 흐름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정답은

‘현장 촬영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이다. 비상등을 켜 뒤 휴대폰으로 두 차량의 접촉부위, 차선 위 차량 위치가 보이도록 전체 구도를 촬영하고(가능하면 신호 상태, 진행 방향도 함께), 필요하다면 스프레이 등으로 차량 위치를 표시한 다음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현장을 무리하게 지키려다 2차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다.

2차 사고 예방 조치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긴 뒤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차량 뒤쪽에 안전 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서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장 보존이 필요하다면 사고장소와 충격 부위, 타이어 자국 등 진행 궤적을



/유투이미지

촬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고속도로·야간·시야 불량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는 촬영보다 안전한 곳으로의 신속한 이동과 경찰 신고가 더 현명할 수 있다.

부상자가 있는 사고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당황한 나머지 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자동차 고장이 발생한다면?

자동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가입한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가 큰 도움이 된다. 장기 미운행으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장시간 정제로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연료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하다.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 견인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자에게 제공되므로, 본인 보험에 해당 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만약 특약이 없는데 고속도로에서 긴급 견인이 필요하다면 한국도로공사 안전지대까지 무상 견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므로 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과실 비율이 궁금할 땐 과실비율정보포털

마지막으로 사고 후 가장 민감한 주제인 과실 비율이다. ‘내가 억울하다’라

는 감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기준을 알아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는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해 만든 국내 유일의 공식 인정 기준을 영상·그림·도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실 비율 분쟁이 발생했다면 당사자끼리 감정싸움을 하기 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용하면 좋다. 또한 인터넷 상담과 전화 상담도 활용할 수 있다. 소송까지 진행되기 전에 공평 타당한 과실 비율 합의안을 제시해 사고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와 상담이 가능하다.

도로 위에서의 선택이 손해를 키우기도, 줄이기도 한다. 경미 사고는 ‘사진 찍고, 안전 이동은 바로’, 갑작스러운 고장은 ‘긴급출동서비스’, 과실 비율은 ‘공식 포털로 기준 확인’.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전운전은 물론, 현실적인 대처 방법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현명한 운전 습관이라 할 것이다.

/안재선 기자